「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인재육성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공도서관 제적・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장서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, 도서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폐기 또는 제적 대상 도서 중 활용 가능한 자료의

재사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도서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음.

❍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도서관의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폐기되는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의 재활용을 유도하고, 「공직선거법」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이 조례에 무상배부의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, 「도서관법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폐기·제적이 가능하고 그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안 제10조제5항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폐기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.

❍ 이번 개정은 활용 가능한 도서의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